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712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백선아 의원 등 4명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에코연합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환경혁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에코연합회 임원의 구성인원을 확대함 (안 제5조제2항)
 - 임원의 구성 : 15명 → 20명
- 에코연합회 회장·부회장을 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(안 제5조제3항)
- 에코연합회 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(안 제5조제6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

위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 임원 구성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임원의 구성원을 확대하고자 하며, 임원 구성 시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
- 아울러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